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96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1. 24.
3. 회 부 일: 2025. 11.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 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1.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u>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u>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u>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u>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u>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u>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생략)	5. 그 밖에 <u>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② <u>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u> ③ <u>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u> ④ <u>대학스포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 -----<u>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u>----- ----- -----<u>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회</u>-----. 제43조(감독) ① ----- ---<u>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u>----- -----. ② (현행과 같음)
--	--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¹⁾.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대학운동부 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기관으로서 대학스포츠에 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부재하여 대학스포츠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체육 분야 유관기관으로 관리 중인 기관 중 유일하게 법령상 설립 근거가 부재한 기관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 분야 유관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 성격	설립 근거법
스포츠윤리센터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대한체육회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직유관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태권도진흥재단	기타 공공기관	「태권도법」 제20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공직유관단체	부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대학스포츠가 국민체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학스포츠 정책 사업을 수행하던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대학스포츠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참고자료1: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개요 참고

다만, 대학스포츠분야에 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 할 경우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²⁾하고 있는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사단법인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할 수 있음.
- 현재 법정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³⁾의 경우도 그 근거법에 교육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스포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스포츠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한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안정적·체계적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는 있으나,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³⁾에도 한국대학스포츠

2)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협의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경우, 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조 등 변경 필요시 정책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② 상시적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으로 연결되며, ③ 대학스포츠 분야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외 다른 분야에서의 특수법인 설치 요구로 확장될 우려가 있는바, 현재 체계와 같이 개별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1. ~ 9. (생략)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 12. (생략)

※참고자료1: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개요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개요**

- (기관명)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KUSF)
- (설립허가) 2010. 07. 16. * 비영리 사단법인/2010. 6. 8. 창립총회, 7. 16. 문체부 허가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설립목적)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협의체로서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연구·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설립비전)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 대학스포츠 건전 문화 창조, 대학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리더십 함양,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

□ **주요 사업**

-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교육
-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 대학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 대학스포츠 인권증진
-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대학스포츠 U-리그 주최 및 운영 / KUSF 클럽챔피언십 개최

□ **조직현황**

- (회원현황) 전국 138개 대학 총장(2025. 12. 현재)
- (임원현황) 조명우 회장(안하대 총장) 등 22인(회장 1, 부회장 6, 이사 13, 감사 2)
- (사무처) 1처 3팀 * 사무처 직원 총 15명 3팀(운영지원팀, 기획총괄팀, 홍보마케팅팀)

□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예산 (단위:백만원)	주요내용(실적)
'23년	18,500	○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 총 74억 원, 130개 대학, 497개 운동부, 학생선수 9,077명 지원 - 체육계대학(한국체대) 총 8억 원, 24개 종목 28개 운동부, 학생선수 966명 지원 ○ 대학운동부 교육 - 소양교육: 135개 대학, 12,864명 - 신입생 교육: 149개 대학, 4,678명 - 리더십 교육: 49개 대학, 89명 ○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 110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DB 구축, 방문자 수 61,193명 - 대입전형요강 발간·배포: 1,041개 고교 -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박람회 부스 방문자 1,218명 1:1상담 122건 ○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 두드림 프로그램: 총 6억원, 29개 대학 지원(학사관리 튜터링) ○ 대학스포츠 심포지엄 - 88개 대학 126명 참석 ○ 지도자 직무교육 - 113개 대학 239명 참석 ○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 65개 대학, 852명(학생선수 291명) ○ 대학스포츠 통합마케팅·브랜딩 - 기자단: U-리그 5개 종목 50명 - 기사 게재: 6,489건(월평균 648건) - 숏폼 조회수: 총 1,874만 회 - 대표 콘텐츠 조회수: 436만 회 ○ 진천선수촌 이동수업/학점인정 - 입촌 국가대표 대학생 학점인정: 64명 ○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 4개종목 입시 평가지표 개발 완료(농구, 배구, 야구, 축구) ○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 주거환경 실태조사 연구 수행 - 인권강사 양성: 10명 - 인권 교육 강사 파견: 36개 대학

		○ KUSF U-리그(전문체육) 운영 - 6개 종목 전국 대학리그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소프트테니스) ○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 - 8개 종목, 879개팀, 14,126명 ○ 리그·대회 중계 및 기록관리 - 중계: 495경기, 순시청자: 170만명 영상노출수: 1,690만회, 경기기록: U-리그 1,117경기, 4,830명 / 클럽챔피언십 929경기, 13,124명 ○ 대학스포츠 공제서비스 - 공제서비스 배상: 106건 처리
'24년	15,000	○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 총 61억 원, 124개 대학, 475개 운동부, 학생선수 8,670명 지원 - 체육계대학(한국체대) 총 6.7억 원, 24개 종목 28개 운동부, 학생선수 897명 지원 ○ 대학운동부 교육 - 소양교육: 136개 대학, 11,259명 - 신입생 교육: 132개 대학, 4,678명 - 리더십 교육: 42개 대학, 102명 - 인권 교육: 39개 대학, 1,318명 ○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 111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DB 구축, 방문자 수 49,298명 - 대입전형요강 발간·배포: 1,056개 고교 -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1:1상담 424건 ○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 두드림 프로그램: 총 3.2억 원, 17개 대학 지원(학사관리 튜터링) ○ 대학스포츠 심포지엄 및 지도자 직무교육(통합개최) - 114개 대학, 총 233명 참석 ○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 65개 대학, 800명(학생선수 263명) ○ 대학스포츠 통합마케팅·브랜딩 - 기자단: U-리그 5개 종목 32명 - 기사 게재: 3,512건(월평균 292건) - 대표 콘텐츠 조회수: 35만 회 ○ 진천선수촌 이동수업/학점인정 - 입촌 국가대표 대학생 학점인정: 73명 ○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 체육특기자 개인경기력 반영 연구 - 경기기록입력시스템 구축(농구)

		○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발간 - 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개최 ○ KUSF U-리그(전문체육) 운영 - 5개 종목 전국 대학리그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 - 8개 종목, 905개팀, 14,052명 ○ 리그·대회 중계 및 기록관리 - 중계: 425경기, 순시청자: 134만명 - 영상노출수: 1,287만회, 경기기록: U-리그 1,032경기, 4,712명 / 클럽챔피언십 883경기, 13,673명 ○ 대학스포츠 공제서비스 - 공제서비스 배상: 145건 처리
'25년	14,500	○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 총 49.4억 원, 130개 대학, 490개 운동부, 학생선수 9,177명 지원 - 체육계대학(한국체대) 총 5.4억 원, 24개 종목 28개 운동부, 학생선수 917명 지원 ○ 대학운동부 교육 - 소양교육: 138개 대학, 12,655명 - 신입생 교육: 137개 대학, 4,526명 - 리더십 교육: 42개 대학, 100명 - 인권 교육: 43개 대학, 1,122명 ○ 학생선수 선발 정상화 - 체육특기자대입포털 운영: 109개 대학 체육특기자 입시 DB 구축, 방문자 수 52,814명 - 대입전형요강 발간·배포: 998개 고교 -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36개 대학 - 박람회 부스 1:1상담 411건, 지원 혜택 소개 4,167건 조회 ○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 두드림 프로그램: 총 3억 원, 15개 대학 지원(학사관리 튜터링) ○ 대학스포츠 심포지엄 및 지도자 직무교육(통합개최) - 103개 대학, 총 165명 참석 ○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 68개 대학, 683명(학생선수 211명) ○ 대학스포츠 통합마케팅·브랜딩 - 기자단: U-리그 5개 종목 32명 - 기사 게재: 2,243건(월평균 203건) - 대표 콘텐츠 조회수: 90만 회 ○ 진천선수촌 이동수업/학점인정

	- 입촌 국가대표 대학생 학점인정: 181명 ○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개발 - 고교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지표 기록 수집 지원(농구, 배구) - 경기기록입력시스템 구축(배구) ○ 대학스포츠 인권 증진 - 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 개최 ○ KUSF U-리그(전문체육) 운영 - 5개 종목 전국 대학리그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아이스하키) ○ KUSF 클럽챔피언십 운영 - 9개 종목, 1,095개팀, 16,205명 ○ 리그·대회 중계 및 기록관리 - 중계: 535경기, 순시청자: 164만명 영상 조회 수: 246만회, 경기기록: U-리그 935경기, 4,497명 / 클럽챔피언십 1348경기, 15,343명 ○ 대학스포츠 공제서비스 - 공제서비스 배상: 105건 처리
--	--